

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 길 영 의원

존경하는 선배·동료위원 여러분!

김 길 영 의원입니다.

지난 2월 7일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본 개정조례안의 발의 내용과 취지를 말씀드리면,

서울시 체육시설들을 운영함에 있어서 명명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.

명명권(命名權) 또는 명칭 사용권(名稱使用權)은 영어로 네이밍 라이츠(Naming rights)로 불리며, 인간과 사물, 시설, 캐릭터 등에

대해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, 공공 체육시설 명명권 활용이 가능해진다면 시설 명칭에 스폰서 기업명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.

서울시 내 공공 체육시설 유지 보수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, 운영 주체인 서울시의 세수를 확대하는 한편, 기업에게는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명명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습니다.

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포해드린 원안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며,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